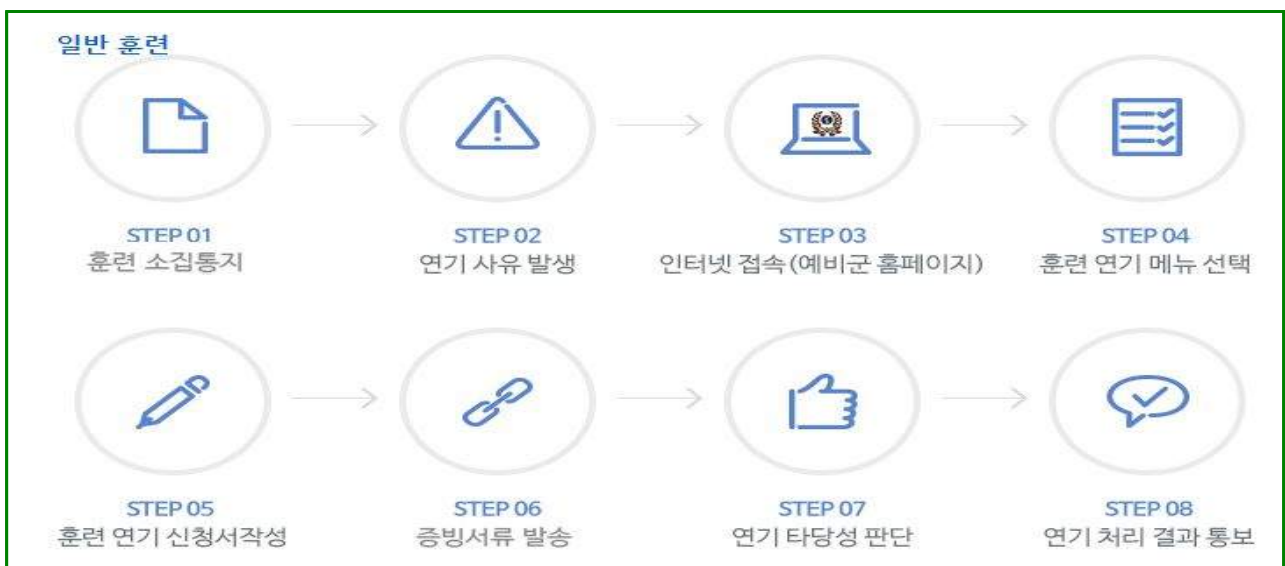


예비군·동원 훈련 연기 안내

□ 훈련 연기이란?

예비군 교육훈련소집을 통지받은 자가 직장이거나 개인신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일자에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훈련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.

□ 연기 절차



□ 훈련 연기신청 시기(학생 예비군 등 예비군 훈련 대상)

-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을 통지 받은 자는 소집 1일 전까지 직장 예비군중대로 신청하며
- 다만,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원서를 제출 할 시간이 없을 때는 전신, 전화 등의 방법으로 훈련소집 기간 종료 시 까지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 제출 가능
- 본인이 제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세대내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 가능

□ 훈련 연기 신청 시기(교직원 등 동원 지정자 중 동원훈련 대상)

- 병무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ma.go.kr>)에서 신청 가능
- 동원훈련 연기사유 및 처리기준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
□ 연기대상(사유) 및 구비서류

○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

- 거동할 수 없는 사람,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,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
 - * 구비서류: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(일반)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
-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
 - * 구비서류: 의료기관에서 발행한(일반) 진단서 / 소견서 불가
- 기타 진료를 위해 훈련일 현재 입원 중인 환자(해당 훈련 기간만 연기)
 - * 구비서류: 입원확인서 사본

○ 직계 존·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

- 직계가족(외조부모 포함)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,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7일전·후와 중복된 경우
 - * 구비서류: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(일반)진단서
- 직계가족(외조부모, 외증조부모 포함) 또는 배우자의 부모(조부모, 증조부모 포함)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, 백·숙부모(고모·부, 이모·부, 외숙부모 포함)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
 - * 구비서류: 사망확인서 및 기타 관계 증명 자료

○ 천재지변 등 재난

-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때
 - * 구비서류: 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

○ 출국(예정)

- 국외체제기간(출·입국일 포함)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- 소집일 이후 출·입국 상황을 확인 직권 연기
 - * 구비서류: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·입국자 명부 직권 확인

○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

-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수업 또는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될 때
 - * 구비서류
 - 출석 수업통지 명단 또는 학사일정 등 출석 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

□ 연기대상(사유) 및 구비서류(계속)

○ 주요 운동경기,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

- 국제규모 또는 전국 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합숙훈련시부터 대회 종료시까지의 기간이 훈련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

* 구비서류: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 발행참가 확인서, 합숙훈련 계획서

○ 각종 시험 응시

- 각종 시험(제한 없음)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

- 행정고시, 회계사, 변리사 등 관련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일 까지 연기

- 시험응시 증빙서류상 시험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예비군부대에서 인터넷 또는 시험 시행기관에 확인하여 처리하고, 근거를 유지한다.

* 구비서류: 응시원서 접수증, 합격증, 수험표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하는 증빙서류

※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 가능,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 포함

○ 본인 결혼 및 부모회갑 등

-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자 5일 전·후인 때
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
- 부모, 처부모의 회갑일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
- 육아 휴직자(휴직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)

* 구비서류: 예식장 계약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○ 주요업무수행

- 주요업무 수행
 - 교육기간(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기간 1일 전, 후 포함)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
 - 국내외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회의 기간이 소집기관과 중복된 경우
 -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, 납품기일 임박, 계약 / 바이어 상담 등

* 구비서류: 교육확인서, 주최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서, 주요업무수행 확인서

- 기타 부득이한 사유

* 구비서류: 개인사유서

※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 가능,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 포함

